



강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강북새마을금고 정관 변경 인가

1. 강북새마을금고 MG0649-875(2016. 4. 7.)호와 관련입니다.
2. 강북새마을금고에서 제출한 ‘강북새마을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’건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인가 처리하고자 합니다.

가. 정관 변경사항 및 검토 내용

정관(안) 변경 신청 조문 내용	법규 및 절차 검토사항	검토의견
정관 제13조(제명) 일부	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1. 총회 개최 및 의결 내용 2.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검토의견	정관 변경 인가에 따른 관련 법규 및 절차 등이 적법하므로 정관 변경을 인가하고자 함.
정관 제14조(탈퇴회원의 환급청구 등) 일부		
정관 제25조의2(의결 취소의 소 등) 신설		
정관 제39조(임원의 결격사유) 일부		
정관 제39조(대출한도) 일부		

나. 정관 변경 인가일: 2016. 4. 22.(금)

- 붙임 1. 정관변경 검토결과 보고서 1부.
 2. 정관변경 신규조문 대비표 1부.
 3. 강북새마을금고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1부.
 4. 강북새마을금고 신 정관 원본 1부(별도 첨부). 끝.

주무관

손경숙

주민자치협력팀장

송우석

자치행정과장

정주영

행정관리국장

고한석

부구청장

04/25
하철승

협조자

시행 자치행정과-9763 () 접수 ()

우 0107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(수유동) / <http://www.gangbuk.go.kr>

전화 02-901-6099 / 전송 901-6108 / hope7391@gangbuk.go.kr / 부분공개